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50628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박현진

피 고 1. B
소송대리인 C
2. C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18. 2.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1) 피고 B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2. 20. 접수 제123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0. 15.
접수 제782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D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고서도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자,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59441호로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이 2016. 11. 29. 지급명령을 하여 2017.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D은 원고에게 92,213,741원 및 이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D과 피고 B 등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E가 사망하자 D과 피고 B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간에 2018. 2. 9.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D의 법정상속분 2/15 지분을 모(母)인 피고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이에 기하여 2018. 2. 20. 피고 B 앞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다시 2019. 10. 15. 피고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무자력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에게는 특별한 자산이 없었다.[인정근거]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나. D의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D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피고 B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소외 D은 당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확보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홍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빌라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8세대)

1층 80.89㎡

61.84㎡

2층 160.30㎡

3층 160.30㎡

4층 160.3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295.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74.63㎡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95.2분의 38.31 끝.

